

# 세법학 II - ② 조세특례제한법

## 조세특례 적용시한(연장·종료)

이 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(2023.8.31.)을 토대로 작성된 『조세특례의 적용시한(연장·종료)』에 관한 목록입니다. 이 자료의 목적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「2024년 세법학 II - ② (조세특례제한법)」 책이 내년 2월에 정식 출간되기 전에 「2023년 세법학 II - ②」 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미리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.

이 자료에 정리된 개별 조세특례 적용시한(연장·종료)에 관한 사항을 책에 표시하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.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건승(健勝)을 기원합니다.

2023. 11. 20.

세무사 정정운 지음

(☆ 중요도)

P	행	조세특례(교재 목차)	
		중전 적용시한	개정 적용시한(연장·종료)
p.43	上 3행	2.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☆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p.44	下 3행	(1)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☆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p.45	上 7행	(2)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☆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p.45	下 5행	2.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	下 3행	2023년 12월 31일까지	
		2026년 12월 31일까지	
p.76	下 14행	1.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인	2028년 12월 31일 이전인
p.77	下 14행	2.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인	2028년 12월 31일 이전에
p.95	上 11행	7.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	
		2023.12.31.까지	2024.12.31.까지
p.107	下 4행	1)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추가세액공제 ☆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4년 12월 31일까지
p.108	下 1행	6.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☆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p.111	下 2행	(2)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☆☆	
		2023년 12월 31일이	2026년 12월 31일이

p.112	上 13행	(3)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☆☆	
		2023년 12월 31일이	2026년 12월 31일이
p.153	上 5행	Ⅲ.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적용시한(종료)
p.155	下 15행	Ⅳ.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인	2025년 12월 31일 이전에
p.166	下 5행	Ⅱ.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4.1.1.부터	2027.1.1.부터
	下 4행	2026년 12월 31일까지	2029년 12월 31일까지
p.167	上 3행	(1)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p.168	上 4행	(2)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p.171	下 5행	Ⅰ. 채무의 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	下 2행	2024년 12월 31일까지	2027년 12월 31일까지
p.173	上 6행	Ⅱ.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	上 9행	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	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
	上 11행	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	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
p.174	上 10행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175	上 9행	Ⅲ.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대한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p.176	下 1행	Ⅳ.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4년 12월 31일까지(수정)
p.179	上 3행	Ⅰ.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	上 17행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182	上 9행	Ⅱ. 채무의 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p.185	上 3행	Ⅲ.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	上 10행	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	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
	上 11행	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	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
p.186	下 14행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189	下 9행	Ⅳ.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
p.191	上 10행	V.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194	下 4행	VI.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까지
p.217	上 10행	1.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5년 12월 31일까지
	上 14행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5년 12월 31일까지
p.219	下 6행	2.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지원 ☆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220	上 11행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	上 16행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	上 19행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221	上 5행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222	上 2행	3.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지원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222	上 15행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	上 16행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	上 19행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	上 23행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223	下 2행	4.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 ☆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224	上 5행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	上 14행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	上 18행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225	上 2행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225	下 11행	5.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☆	
		2023.12.31.까지	2026.12.31.까지
p.243	上 3행	1.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☆☆☆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245	下 5행	II.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☆☆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6년 12월 31일 이전에
p.258	上 12행	2.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p.265	上 12행	(2)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p.274	上 8행	5.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
p.277	上 11행	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	
		2023.12.31.까지	2026.12.31.까지
p.278	上 12행	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☆	
		2023.12.31.까지	2026.12.31.까지
p.283	下 13행	2. 상가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
		2023.12.31.까지	2026.12.31.까지
p.290	下 2행	Ⅳ.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p.293	上 1행	Ⅴ.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	
		2022.12.31. 이전에	2023.12.31. 이전에
	上 3행	2025.12.31.까지의	2026.12.31.까지의
p.294	上 2행	2026.12.31.까지	2027.12.31.까지
p.319	上 12행	2.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
		2023.12.31.까지	2026.12.31.까지
p.330	上 10행	1. 감면대상사업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	上 14행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	上 17행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6년 12월 31일까지
p.361	上 13행	1.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	
		③ ~ ~ 2023.12.31.	③ ~ ~ 2026.12.31.
	上 18행	④ ~ ~ 2023.12.31.	④ ~ ~ 2026.12.31.
	p.362	上 17행	2. 부가가치세 면세
③ ~ ~ -			③ ~ ~ 2026.12.31.
上 26행		⑧ ~ ~ 2023.12.31.	⑧ ~ ~ 2026.12.31.
p.363	上 14행	⑫ ~ ~ 2023.12.31.	⑫ ~ ~ 적용시한(종료)
	上 15행	⑬ ~ ~ 2023.12.31.	⑬ ~ ~ 2025.12.31.
	上 17행	⑭ ~ ~ 2023.12.31.	⑭ ~ ~ 2024.12.31.
p.374	下 9행	Ⅲ.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☆	
		2023년 12월 31일까지	2025년 12월 31일까지
p.375	下 6행	1.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·교육비 세액공제 ☆	
		2023년 12월 31일이	2026년 12월 31일이
p.376	下 5행	2.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☆	
		2023년 12월 31일이	2026년 12월 31일이
p.377	上 10행	Ⅱ. 금사업자와 스크램블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	
	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	2023년 12월 31일 이전에(종료)